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2020. 9.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0-75

2020. 9. 9.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홍민 의원 외 7 인

나. 제 안 일 : 2020. 9. 2.

다. 회 부 일 : 2020. 9. 3.

2. 제안이유

마포구 주거지역에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확대 보급하여 연료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집단에너지 공급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건설비용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융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의 대상 및 조건(안 제5조~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집단에너지사업법」

2)「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20. 5. 29.~ 6. 2.(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배경

○ 본 제정조례안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마포구 일부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지역난방을 에너지 복지향상, 연료비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나. 주요 조문 검토

○ 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9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건설비용의 대출이나 대부할 때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다.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0년 2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립됨에 따라 에너지생태계가 미세먼지, 기후변화대응 등 국민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좀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음.

○ 마포구 공동주택은 66,582호[1]로서 전체 주택호수 118,619호 대비 56%에 해당하며 난방 형식중 개별난방 및 지역난방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

1) 제34회 마포통계연보(2019)

르면 약70% 임.

○ 또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조례가 지출근거를 직접규정하면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정책과 법적·제도적 근거에 따라 주민의 에너지 복지차원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특정 지역에 편중성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재정의 부담정도를 파악하여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융자금과 관련된 이자 지원과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세밀한 시행규칙을 세워야 하겠음.

[관 계 법 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부지 확보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세부 산정기준,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